

한국 리모델링 협회

취급

우) 135 - 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전화 () - / 전송 () -
사무국 리모델링 기술인증 TF팀 홍길동 사무국 총장 차정윤 담당 홍길순 (ygil@ttep.re.kr)	

문서번호 리모델 05-137

시행일자 2005. 03. 08.

공개여부 (비공개)

수신 홍길표 위원님

참조

선 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품질인증 2차심사(현장실사) 참석 의뢰

1. 우리협회에 신청된 “oo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품질인증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심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심사는 신청인의 참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며, 신청건의 공사에 관여하셨거나 이해관계가 있으시면 예비심사 전까지 저희 협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심사 의견서 작성 요령은 첨부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 03. 16(수)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 담당자(홍길순 rirux@cttep.re.kr, 전화 : -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관리 번호	심사대상기술	신 청 자	삼사일시	장 소	비고
1	oo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oo건설	2005.03.18 (금)오후2시	한국리모델링 협회 사무국 회의실	신규 신청

붙 임 : 1. 품질인증 지정신청서 1부 끝.

한국 리모델링 협회

신청서 검토시 참고사항

1. 품질인증 지정 제도

○ 목적 : 공인된 기관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품질등급을 부여한다면 건축주나 입주자가 품질등급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신청자에게는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대상 : 신청자가 신청한 현장시공, 설계의 품질확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증대상 건축물

- 1) 공동주택
- 2) 상가 및 사무실 건물
- 3) 공장 등 특정시설물

인증의 종류범위

- 1) 안전진단 인증 (안전진단방법 및 결론의 적정여부 평가 및 판정)
- 2) 리모델링 설계도서 및 보강안에 대한 인증
(보강안 및 보강방법의 적정성 인증)
- 3)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인증 (공사의 적정성 및 보강결과에 대한 인증)
- 4) 종합인증 (위의 항의 조합 및 모두 포함)

2. 품질인증 지정요건이란?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이나 현장

※ 판단근거 : 국내에서 최초 개발 또는 개량된 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 건설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또는 이 기술을 적용한 현장으로 신청자가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공학적 근거자료

○ 진보성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이나 현장

※ 판단근거 : 기존의 공법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해당 공종의 전후 공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나 현장
 - ※ 판단근거 : 신청기술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상당히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객관적·과학적인 자료
 - ※ 위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품질인증 기술 또는 현장으로 지정 (지정기간은 3년임)

3. 품질인증 기간연장 요건이란?

- **기간연장** : 인증일로부터 3년 경과후 재인증 여부 심의 및 결정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 등 시공현장에서의 적용성이 검증된 기술 또는 이를 적용한 현장
- **품질검증** : 지정 시 제시된 신기술이 내용이 시공사례를 통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이나 현장

4. 심사방법 및 내용

(1) 예비심사(1차 심사)

- 신청서의 해당분야를 고려하여 9~12명의 위원으로구성
- 예비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추가 검토사항 결정 현장실사 일자/장소 및 실사내용 검토
 - ※ 예비심사위원들은 신청서 검토 후 “예비심사결과”를 품질인증 심사일 2일전까지 사무국의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으로 보내주어야,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 가능

(2)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품질인증의 지정요건 및 기간연장요건을 확인·검증하기 위해 실시
- 현장실사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시기, 장소, 실사참여 위원, 체크리스트를 결정하되, 가급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신청인이 현장실사가 가능한 10개소 이하를 선정하고, 이 10개소에 대한 “현장실사 참고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서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장실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심사비를 지급하고, 이 심사비와는 별개로 예비도 지급함

(3) 본심사(2차 심사)

- 신청서의 해당분야를 고려하여 9~12명의 위원으로구성
- 위원회 심사는
 - 첫째) 신청기술에 대한 심층분석(위원간 상호질의 및 토의)
 - ※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 기술설명, 위원 질의 및 이해관계인 답변
 - 둘째) 신청기술 평가(인정, 불인정)
 - 평가등급 결정 - Gold, Silver, Copper Mark
 - 셋째) 신청기술의 명칭 및 신청기술의 범위 조정

5. 품질인증 기술 또는 현장 지원시책 강화

- 한국리모델링 협회 홈페이지, 회원 및 회원사/건설사 및 관공서에 이메일 및 우편발송을 통하여 신청회사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마련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 국가가 시행하는 턴키공사 등에 “인증업체”에 가점부여토록 제도적으로 추진
-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협회의 인증제도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반법적인 요건분석 및 제도반영 추진
- ☞ 위 인센티브의 부여로 인해 품질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 가능

6. 신청서 검토 시 유의사항

(1) 예비심사(1차 심사)

- 예비심사는 본 심사를 대비한 심사로서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 심사 시 참고될 수 있도록 보완자료 도출.
- 신청서의 내용, 관련자료 등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를 가려 보완사항을 도출
- 예비심사위원은 예비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결과는 절대 비밀유지

(2) 본심사(2차 심사)

- 품질인증 인정 시
 - 심사의결서에는 지정(연장)요건 3가지 사항이 모두 검증된 사유를 기술
 - 명칭과 범위는 신청서 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명칭과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고 축소 조정만이 가능.
 - 명칭을 표현함에 있어서, ① 신청기술을 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청기술만의 특징이나 특징이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고, ② 기존의 기술이나 범용적인 표현은 피하고. ③

기존 기술과 차별성 및 진보성 있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고, ④ 기술의 시행절차 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내용이 아닌 신청기술의 내용을 표현.

○ **신기술 불인정 시**

- 심사의결서에는 불인정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자료의 미비로 심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자료의 미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7.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심사참여 제한

신기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당해 신청 기술의 심사참여를 제한함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 신청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 기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